#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에 의한 기납입보험료” 등 기본보험료 부분에 관련된 용어들은 해당 용어 앞에 [기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예시) [기본]계약자적립액, [기본]기납입보험료 등

또한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기납입보험료”등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에 관련된 용어들은 해당 용어 앞에 [추가]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예시) [추가]계약자적립액, [추가]기납입보험료 등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사 업 방 법 서

(사업 방법서 별지)

#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1. 보험종목의 명칭

| 유형 | 구분 | 종류 및 명칭 |
|---|---|---|
| 일반가입형 | 보장형 |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보장형 계약 |
| | 적립형 |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적립형 계약 |
| 간편가입형 | 보장형 | 무배당 간편가입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보장형 계약 |
| | 적립형 | 무배당 간편가입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적립형 계약 |

(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우 「20.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에만 적용함)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장형 계약)

가. 기본보험기간

| 가입나이 범위 | | | | | | | | | |
|---|---|---|---|---|---|---|---|---|---|
| 유형 | 보험기간 | 보험기간 유형 | 납입기간 | 납입기간 유형 | 납입주기 | 남자(세) | | 여자(세) | |
| | | | | |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일반가입형 | 60 | 세 | 60 | 세 | 월납 | 만15 | 40 | 만15 | 40 |
| 일반가입형 | 70 | 세 | 70 | 세 | 월납 | 만15 | 50 | 만15 | 50 |
| 일반가입형 | 80 | 세 | 80 | 세 | 월납 | 만15 | 60 | 만15 | 60 |
| 일반가입형 | 90 | 세 | 90 | 세 | 월납 | 만15 | 70 | 만15 | 70 |
| 간편가입형 | 60 | 세 | 60 | 세 | 월납 | 30 | 40 | 30 | 40 |
| 간편가입형 | 70 | 세 | 70 | 세 | 월납 | 30 | 50 | 30 | 50 |
| 간편가입형 | 80 | 세 | 80 | 세 | 월납 | 30 | 60 | 30 | 60 |
| 간편가입형 | 90 | 세 | 90 | 세 | 월납 | 30 | 75 | 30 | 75 |

나. 플러스보험기간

| 기본보험기간 | 플러스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 60세 | 6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15년 | 일시납 | 일시납 |
| 70세 | 7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15년 | 일시납 | 일시납 |
| 80세 | 8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15년 | 일시납 | 일시납 |
| 90세 | 9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15년 | 일시납 | 일시납 |

※ 「22. 기타사항」 “가. 플러스보험기간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적립형 계약)

| 유형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납입주기 |
|---|---|---|---|---|---|
| | | | 남자 | 여자 | |
| 일반가입형 | 종신 | 전기납 | 만15세~80세(전환시점의 나이) | | 월납 |
| 간편가입형 | 종신 | 전기납 | 30세~80세(전환시점의 나이) | | 월납 |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별도의 의무가입 내용이 없음

### 4.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하지 않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기간 종료일 - 1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3)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라 "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① 정기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이다. 다만,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시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이다. 다만,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4)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①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5) (4)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의 10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

(6)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7) (6)에 따라 추가로 납입된 보험료는 (4)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장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 구분 | 납입한도 |
|---|---|
|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연) x 12) x 100% |
| 1회 납입 가능한<br>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기본보험료 납입횟수) x 100%<br>-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형 계약)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이며, 기본보험료의 납입은 최소 10만원과 「20.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라' 의 (6)에서 정한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의 0.5% 중 큰 금액 이상 최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만원 단위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0만원이다. 다만,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0만원이다. 다만,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3)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다음을 따른다.

①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12×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계약의 경우 전환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전환 후 경과년수는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 구 분 | 납 입 한 도 |
|---|---|
|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연) x 12) × 200% |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경과월수)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br>(다만,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계약의 경우 전환 후 경과년수별로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

## 6.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경될 수

있다.

(적립형 계약)
해당사항 없음

## 7.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형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나. 해지계약의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다만, 계약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의 계약자적립액(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다. 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의 공제되지 않은 월공제액 및 월대체공제액을 각 펀드에서 공제한다.

마. 적립형 계약의 경우 '가'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

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 기준에 따라서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인출할 때 수수료는 중도인출금액의 0.2% 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부가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보장형 계약)

(1) 보험년도 기준 연 4회,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을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 할 수 있다.

①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해약환급금(다만,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이다.

② 인출 후 [기본]해약환급금(다만,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총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적립형 계약)

(1)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을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 할 수 있다.

①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이다.

②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 에 의하여 중도인출을 할 경우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보장형 계약의 총 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가’에 의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다.

나. 적립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나’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라. 약관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마. ‘나’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 적립액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 』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한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다만, 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보험계약적립액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보험계약대출시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을 따른다.

바.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사.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3.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가.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기본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액과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적립형 계약)

가. 최저사망보험금

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21.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최저사망보증금액을 말한다.

## 14. 기납입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가. [기본]기납입보험료

(1)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2) 계약자가 중도인출하여 [기본]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된 경우 [기본]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text{인출 후 [기본]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 전 [기본]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3) 기본보험금 감액 후 [기본]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text{감액 후 [기본]기납입보험료} = \text{감액 전 [기본]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4) 중도인출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는 경우의 [기본]기납입보험료는 중도인출 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기본]기납입보험료에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 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기본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단,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한다)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본다.

나. [추가]기납입보험료

(1)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2) 계약자가 중도인출하여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된 경우 [추가]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 인출 후 [추가]기납입보험료 | = | 인출 전 [추가]기납입보험료 | × | 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 / 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

(3)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의 [추가]기납입보험료는 중도인출 후 [추가]기납입보험료에 해당 중도인출 후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적립형 계약)

가. 적립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20.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사'의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월 특약보험료 해당분이 납입되지 않고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나. 중도인출 후 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 | | | |
|---|---|---|---|---|
| 인출 후 [기본]기납입보험료 | = | 인출 전 [기본]기납입보험료 | × | 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 / 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

| | | | | |
|---|---|---|---|---|
| 인출 후 [추가]기납입보험료 | = | 인출 전 [추가]기납입보험료 | × | 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 / 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

다. 기본보험료 감액 후 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추가]기납입보험료는 변경되지 않는다.

| | | | | |
|---|---|---|---|---|
| 감액 후 [기본]기납입보험료 | = | 감액 전 [기본]기납입보험료 | × | 감액 후 [기본]계약자적립액 / 감액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

## 15. 월공제액 및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가. 월공제액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적립형 계약)

가. 월대체공제액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제외) 및 선택한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사항

(보장형 계약)

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한다.

나.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적립형 계약)

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한다.

나.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 17.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3)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채권형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② 가치주식형 2호 : 우량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종목 중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③ 성장주식형 2호 : 우량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종목 중 시장평균 이상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④ 미국주식형 3호 :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표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달러표시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달러표시 우량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3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의 달러표시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ETF에 투자할 경우 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글로벌주식형 2호 : 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인덱스주식형 2호 : KOSPI200 인덱스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⑦ 아시아주식형 2호 : 아시아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⑧ 유럽주식형 : 유럽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⑨ 글로벌채권형 : 해외 각국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⑩ 브릭스주식형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⑪ 골드투자형 : 금 상품 가격 추종을 위해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예치, 단기대출 등 유동성 자산(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을 포함)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ETF에 투자할 경우 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⑫ 글로벌 고배당 주식형 : 전세계 고배당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⑬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형 :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⑭ 글로벌 멀티인컴 : 전세계 고배당 주식, 채권 및 대안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⑮ MMF형: 단기채권,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예금 등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⑯ 배당주식형 2호 : 우량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고배당을 지급하는 종목과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는 펀드

⑰ 안정 포트폴리오형 : 저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⑱ 중립 포트폴리오형 : 중립적인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⑲ 적극 포트폴리오형 :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⑳ 달러단기채권형 : 미국 달러화(USD)로 발행된 국채, 회사채 등 단기 달러 표시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MMF 및 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달러화(USD)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㉑ 미국채권형 : 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표시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미국 외 발행자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 및 달러화(USD)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㉒ 글로벌 IT 섹터 : 전세계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IT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㉓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 제약, 생명과학, 의료장비, 헬스케어 서비스 등 전세계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㉔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섹터 : 통신, 인터넷, SNS,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 전세계 커뮤니케이션서비스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㉕ 중국주식형 : 중국 본토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㉖ 글로벌 ESG 주식형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Environment), S(Social), G(Governance)요소가 유명한 산업을 비롯하여 ESG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㉗ 글로벌AI자산배분 : 펀드 운용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펀드로,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별 투자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펀드. 동 펀드는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함.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㉘ 은퇴맞춤 TDF2035 : 투자자의 은퇴시점(2035년)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로, 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확대하여 투자함. 동 펀드는 국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함.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㉙ 은퇴맞춤 TDF2045 : 투자자의 은퇴시점(2045년)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로, 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확대하여 투자함. 동 펀드는 국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함.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㉚ 은퇴맞춤 TDF2055 : 투자자의 은퇴시점(2055년)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로, 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확대하여 투자함. 동 펀드는 국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함.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4)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다음과 같다.

(기준 : 특별계정적립액)

| 펀 드 명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 계 | |
|---|---|---|---|---|---|---|
| | | | | | 매년(ε) | 매일 |
| 채 권 형 | 0.34% | 0.10% | 0.02% | 0.02% | 0.48% | 0.0013150685% |
| 성장주식형 2호 | 0.69% | 0.21% | 0.02% | 0.02% | 0.94% | 0.0025753425% |
| 가치주식형 2호 | 0.69% | 0.23% | 0.02% | 0.02% | 0.96% | 0.0026301370% |
| 미국주식형 3호 | 0.69% | 0.05% | 0.04% | 0.02% | 0.80% | 0.0021917808% |
| 글로벌주식형 2호 | 0.53% | 0.05% | 0.04% | 0.02% | 0.64% | 0.0017534247% |
| 인덱스주식형 2호 | 0.69% | 0.20% | 0.02% | 0.02% | 0.93% | 0.0025479452% |
| 아시아주식형 2호 | 0.53% | 0.05% | 0.04% | 0.02% | 0.64% | 0.0017534247% |
| 유럽주식형 | 0.40% | 0.05% | 0.04% | 0.02% | 0.51% | 0.0013972603% |
| 글로벌채권형 | 0.25% | 0.05% | 0.04% | 0.02% | 0.36% | 0.0009863014% |
| 브릭스주식형 | 0.45% | 0.05% | 0.04% | 0.02% | 0.56% | 0.0015342466% |
| 골드투자형 | 0.30% | 0.05% | 0.04% | 0.02% | 0.41% | 0.0011232877% |
| 글로벌 고배당주식형 | 0.50% | 0.10% | 0.04% | 0.02% | 0.66% | 0.0018082192% |

| 펀 드 명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 계 | |
|---|---|---|---|---|---|---|
| | | | | | 매년(ε) | 매일 |
| 글로벌 하이일드채권형 | 0.50% | 0.08% | 0.04% | 0.02% | 0.64% | 0.0017534247% |
| 글로벌멀티인컴 | 0.50% | 0.05% | 0.04% | 0.02% | 0.61% | 0.0016712329% |
| MMF 형 | 0.15% | 0.01% | 0.02% | 0.02% | 0.20% | 0.0005479452% |
| 배당주식형 2호 | 0.69% | 0.30% | 0.02% | 0.02% | 1.03% | 0.0028219178% |
| 안정 포트폴리오형 | 0.41% | 0.05% | 0.04% | 0.02% | 0.52% | 0.0014246575% |
| 중립 포트폴리오형 | 0.47% | 0.05% | 0.04% | 0.02% | 0.58% | 0.0015890411% |
| 적극 포트폴리오형 | 0.52% | 0.05% | 0.04% | 0.02% | 0.63% | 0.0017260274% |
| 달러단기채권형 | 0.15% | 0.05% | 0.04% | 0.02% | 0.26% | 0.0007123288% |
| 미국채권형 | 0.25% | 0.05% | 0.04% | 0.02% | 0.36% | 0.0009863014% |
| 글로벌 IT 섹터 | 0.45% | 0.05% | 0.04% | 0.02% | 0.56% | 0.0015342466% |
|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 0.45% | 0.05% | 0.04% | 0.02% | 0.56% | 0.0015342466% |
|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섹터 | 0.45% | 0.05% | 0.04% | 0.02% | 0.56% | 0.0015342466% |
| 중국주식형 | 0.45% | 0.02% | 0.04% | 0.02% | 0.53% | 0.0014520548% |
| 글로벌 ESG 주식형 | 0.53% | 0.05% | 0.04% | 0.02% | 0.64% | 0.0017534247% |
| 글로벌AI자산배분 | 0.69% | 0.10% | 0.04% | 0.02% | 0.85% | 0.0023287671% |
| 은퇴맞춤 TDF2035 | 0.69% | 0.10% | 0.04% | 0.02% | 0.85% | 0.0023287671% |
| 은퇴맞춤 TDF2045 | 0.69% | 0.10% | 0.04% | 0.02% | 0.85% | 0.0023287671% |
| 은퇴맞춤 TDF2055 | 0.69% | 0.10% | 0.04% | 0.02% | 0.85% | 0.0023287671% |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1)의 표에서 정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라.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1)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한다.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마.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

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자금이체할 때 기준가격

① 자금이체할 때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아래의 ②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제외)

ⓒ 월공제액 및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 펀드자동재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 펀드수익자동이전을 실행하는 경우

ⓕ 라이프싸이클 펀드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 평균분할투자 옵션의 실행으로 최초 MMF형 펀드 투입 이후 MMF형 펀드에서 계약자가 정한 다른 펀드로 투입하는 경우

ⓗ 플러스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4)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한다.

①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②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대량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다.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② (1)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사.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아.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자.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②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③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⑤ ① 내지 ④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약관 제39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처리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5) 월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 및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다만, 월공제액 및 월대체공제액의 계산 및 차감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따른 이체 기준가격 적용일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20.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계약인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은 계약
(2) 전환 신청 당시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이 기납입보험료의 70%와 1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계약
(3) 계약일부터 7년이 지난 계약

나. '가'의 보장형 계약에서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은 전환 신청할 때의 주계약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1)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3억 미만인 계약: 전부전환만 가능
(2)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3억 이상인 계약: 일부(계약자적립액의 50% 이상이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또는 전부전환 가능

다. '나'의 (2)에 따라 보장형 계약에서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전환하는 경우 계약자는 전환비율을 50%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라. '나'의 (2)에 따라 보장형 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중도인출금액 및 기납입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되며,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은 아래에서 정의된 금액으로 한다.

(1)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 | | | |
|---|---|---|---|---|
| 일부전환 직후<br>보장형 계약의<br>보험가입금액 | = | 일부전환 직전<br>보장형 계약의<br>보험가입금액 | × | (1 - 전환비율) |

(2)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 | | | | |
|---|---|---|---|---|
| 일부전환 직후<br>보장형 계약의<br>기본보험료 | = | 일부전환 직전<br>보장형 계약의<br>기본보험료 | × | (1 - 전환비율) |

(3) 보장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 | | | |
|---|---|---|---|---|
| 일부전환 직후<br>보장형 계약의<br>추가납입보험료의<br>합계 | = | 일부전환 직전<br>보장형 계약의<br>추가납입보험료의<br>합계 | × | (1 - 전환비율) |

다만, 일부전환 이후에 보장형 계약에서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일부전환 이후 보장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는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와 「일부전환 이후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보장형 계약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 | | | |
|---|---|---|---|---|
| 일부전환 직후<br>보장형 계약의<br>[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br>중도인출금액의<br>합계 | = | 일부전환 직전<br>보장형 계약의<br>[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br>중도인출금액의<br>합계 | × | (1 - 전환비율) |
| 일부전환 직후<br>보장형 계약의<br>[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의<br>중도인출금액의<br>합계 | = | 일부전환 직전<br>보장형 계약의<br>[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의<br>중도인출금액의<br>합계 | × | (1 - 전환비율) |

다만, 일부전환 이후에 보장형 계약에서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액을 계산한다.

| | | | | |
|---|---|---|---|---|
| 보장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 |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 | 일부전환 이후 발생한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금액 |
| 보장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 |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 | 일부전환 이후 발생한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금액 |

(5)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 | | | | |
|---|---|---|---|---|
|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 = | 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 × | (1 - 전환비율) |
|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추가]기납입보험료 | = | 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추가]기납입보험료 | × | (1 - 전환비율) |

다만, 일부전환 이후에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약관 제2조의2 제1항의 “1. 보험료 관련 용어”에서 “(4) 기납입보험료”에 따라 계산한다.

(6)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 | | | |
|---|---|---|---|---|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추가]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 | 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 × | 전환비율 |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추가]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 | 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추가]기납입보험료 | × | 전환비율 |

마. '가' 내지 '다'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하고,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아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1)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50배 이상

(2)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하

바. '가' 내지 '다'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이 승낙 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

사.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보장형 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전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

|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 = | 전환 당시 보장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 | + | 전환 당시 보장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
|---|---|---|---|---|

(2) 보장형 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

|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 = |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 | + |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
|---|---|---|---|---|

|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 | = | 전환 당시 보장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 | × | 전환비율 |
|---|---|---|---|---|

|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 = | 전환 당시 보장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 × | 전환비율 |
|---|---|---|---|---|

아. ‘사’ 의 경우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한 때에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이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

이체」를 적용하고,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자. '가' 내지 '다'에 따라 보장형 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 교체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1)호 또는 (2)호에서 정한 사람 중 1명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교체할 수 없다.

(1)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자녀 중 1명

(2)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차. '자'의 (1) 또는 (2)에서 정한 자 중 1명으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 전 피보험자 및 교체 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환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과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 전환한 경우의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교체 전 피보험자로 유지된다.

카. 기타 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타.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는다.

파.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변경되지 않으며,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전부전환할 경우 적립형 계약, 일부전환할 경우 보장형 계약으로 한다.

## 21.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과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 | |
|---|---|---|
|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해당액<br>+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추가]기납입보험료 해당액<br>+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br>+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

나. 중도인출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다음에 의해 계산한 최저사망보증금액과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text{인출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text{인출 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times \frac{\text{인출 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다. 기본보험료 감액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다음에 의해 계산한 최저사망보증금액과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text{감액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text{감액 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라. 해당 월의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마.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의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감액 후 또는 중도인출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인출 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22. 기타사항

가. 플러스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플러스보험기간을 적용한다.

(2) 플러스보험기간의 보험기간은 15년이며, 보장개시일은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이다.

(3) 플러스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기간 만료 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에 따라 계산된 보험가입금액을 만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나. 이 상품의 간편가입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2호)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하며, 간소화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2)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심사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참조)을 받는다.

(3) 본 계약의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일반심사 대상인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에 청약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본 계약의 무효를 원하면 회사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단, 본 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3)의 각 용어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정의를 따르며,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또한 "연금보험"이란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5) 간편심사상품의 청약 시,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청약시점 직전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체 여부 재심사를 통해 일반가입형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동일한 담보의 일반가입형 상품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계약자가 이 보험을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전환한다.

다만,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은 계약자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다.

(1) 무배당 종신보험 전환(“아. 종신전환에 관한 사항” 참조)

(2) 무배당 연금보험 전환(“바.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사.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참조)

(3) 무배당 저축보험 전환(“자. 저축전환에 관한 사항” 참조)

라.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마. 계약자적립액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기본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2) 계약자적립액 변동에 관한 사항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

바.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이 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2)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3)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주계약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다.

(4)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5)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하다.

①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계약

② 전환 신청 당시의 특약을 제외한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6)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한다.

사.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이 보험을 원화 변액보험이 아닌 외화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외화보험(「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한다.

(2)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해약환급금(다만,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산기준일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른다.

(3)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한 계약 :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10,000달러 이상인 계약

② ①의 “최소전환가능시점” 이전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계약의 경우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크고, 90,000달러 이상인 계약

(4)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5)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6)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한다.

(7)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주계약 전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부분 연금전환할 수 있다.

아. 종신전환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이 보험을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보험나이 및 기초율을 적용한다.

(3)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통한 종신보험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하다.

- 전환 전 계약을 7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
- 전환 전 계약을 전부 해지한 경우

자. 저축전환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저축전환은「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하 “저축전환” 은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의 적용을 의미한다.)

(2) 계약자가 이 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환산기준일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른다.

(3) 저축전환은 저축보험으로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4) 저축전환은 전환 전 계약을 7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특약(제

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한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전체 주계약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저축전환의 가입금액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차. 조기 계약전환 옵션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회사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계약전환 옵션의 실행(이하 “조기 계약전환 옵션” 이라 합니다)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본 계약을 회사가 정한 전환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조기 계약전환 옵션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계약(보험료를 36회 이상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1)의 회사에서 정한 사유라 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기 계약전환 옵션을 신청할 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②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입·퇴원확인서

③ 계약체결 당시 대표이사였던 직위가 전환신청 당시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④ 계약체결 당시 최대주주였던 직위가 전환신청 당시 변경된 경우 :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3) 계약자가 조기 계약전환 옵션의 실행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 이 계약의 잔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해지한 후 이 계약을 회사가 정한 전환상품으로 전환한다.

(4) 조기 계약전환 옵션에 따라 계약이 전환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환된 상품의 약관 및 기초서류를 따른다.

(5) 다만, (1) 내지 (4)에 의하여 조기 계약전환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할 당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한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6) (1)의 회사에서 정한 전환상품이라 함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말한다.

카.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타.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파.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한다.

하.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거.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1)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2)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진다.

(3) 본 서비스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

(별첨 제1호)

#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간편심사 관련]**

1. 이 상품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일반심사보험은 아래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비교(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 아래는 보험료 비교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일반심사보험으로는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상품구분</td><td>간편심사보험</td><td>일반심사보험</td></tr>
<tr><td>계약 승낙 여부</td><td>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td><td>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td></tr>
<tr><td>보험료 예시</td><td>
<table>
<tr><td>나이</td><td>남자</td><td>여자</td></tr>
<tr><td>40세</td><td>000 원</td><td>000 원</td></tr>
<tr><td>50세</td><td>000 원</td><td>000 원</td></tr>
<tr><td>60세</td><td>000 원</td><td>000 원</td></tr>
</table>
※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td><td>
<table>
<tr><td>나이</td><td>남자</td><td>여자</td></tr>
<tr><td>40세</td><td>000 원</td><td>000 원</td></tr>
<tr><td>50세</td><td>000 원</td><td>000 원</td></tr>
<tr><td>60세</td><td>000 원</td><td>000 원</td></tr>
</table>
※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td></tr>
</table>

㈜ 1.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 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님에게 설명하고, 이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교부받고,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친권자 (인/서명)

(별첨 제2호)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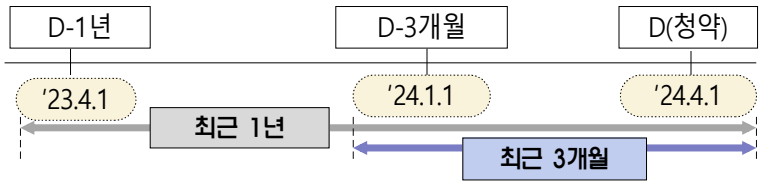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6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이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2,5년 이내)'는 청약일의 3개월 전일(2,5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 건 강 상 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④ 질병확정진단 ⑤ 질병의심소견

※ 필요소견 및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 환경 및 기타**

4.직업에 관한 사항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업　　직장명(근무처/소속부서)　　취급업무(구체적으로 하는 일)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5.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피보험자:　,　/　배우자:　,　)

① 승용차(영업용) ② 승용차(자가용) ③ 승합차(영업용) ④ 승합차(자가용) ⑤ 화물차(영업용)

⑥ 화물차(자가용) ⑦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영업용) ⑧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자가용)

⑨ 건설기계 ⑩ 농기계 ⑪ 기타(　)

6.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 알릴 의무가 없는 상품입니다.)

7. 월평균소득(계약자 기준) : ( )만원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